

# 하도급 계약 체결 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수급사업자(이하 “협력업체”)가 원사업자인 (주)오뚜기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력업체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주)오뚜기가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본 업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체결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수의계약: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 ② 지명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③ 제한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④ 일반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주)오뚜기의 계약체결방식은 지명경쟁계약 또는 제한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① 특정 업체의 기술, 용역, 설비, 품질,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② 해당 물품의 공급업체가 (주)오뚜기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 중 단일업체인 경우
- ③ 적극적인 기술협조 또는 경쟁력 있는 사전 견적 제시로 (주)오뚜기의 경쟁력에 현저히 기여한 업체
- ④ 특정업체가 자체 개발한 제품을 계약할 경우
- ⑤ 특정업체만 수행할 수 있거나, 긴급, 영업비밀 보호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 ⑥ 원자재가격 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⑦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특허 또는 신기술 적용,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
- ⑧ 물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여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 ⑨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품질 관리가 곤란하여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 ⑩ 업체의 부도, 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문제 발생으로 정상적이 생산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⑪ 기타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조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오뚜기는 업체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가 제안을 할 수 있는 설명회나 사이버 제안마당을 운영한다.

### 제4조 (PRM의 구축)

㈜오뚜기는 협력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관련정보(지원정책, 선정기준 및 절차, 취소기준및 절차)를 제공하고 협력을 지원한다.

### 제5조 (협력업체 지원조직 운영)

㈜오뚜기는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 제6조(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

#### (1) 서면의 사전발급

- ①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개별계약서 또는 발주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④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납품을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① 물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및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③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④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3) 명확한 납기

- ① ㈜오뚜기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단, (주)오뚜기는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배상 대응하여야 한다.

**(4) 객관적 검사기준**

- ①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②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하여야 한다.

**(7) 계약 해제·해지**

- ① 다음의 경우는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 해지가 가능하다.
  -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2.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② 다음의 경우는 1개월 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 해지할 수 있다.
  - 1.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한다.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①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 ②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③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④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 ⑤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⑥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②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④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⑤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⑥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 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①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②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5)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 제8조(계약 이행시 금지사항)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①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②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③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를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④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⑤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⑥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⑦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률 이유를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2) 부당한 반품 행위

- ①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②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③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④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①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②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③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④ 제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절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⑤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⑥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⑦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⑧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⑨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⑩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⑪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⑫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①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②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③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5) 자신의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자신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7) 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탈법 행위**

- ①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②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③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 ①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②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① 거래업체에게 납품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② 거래업체에게 납품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11) 기술자료 제공 강요 행위**

- ①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
  -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3.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②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제9조(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2) 단가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부 칙 (2013.10.7.)**

본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27.)**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